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박기열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263호

다. 제출일자 : 2018. 11. 20.

라. 회부일자 : 2018. 12. 28.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지권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377호

다. 제출일자 : 2019. 1. 31.

라. 회부일자 : 2018. 2. 7.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승미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385호

다. 제출일자 : 2019. 1. 31.

라. 회부일자 : 2019. 2. 7.

II. 제안사유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와 이를 단속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안전 및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자전거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사항도 같이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 한해 서울시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 그간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것을 통일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 자전거 주차장 설치시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시장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자전거 이용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 (안 제4조제5항 신설)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할 경우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 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2항)

IV. 참고사항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4 ~ 2019. 1. 1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수정동의

- 제3조제3항은 '19.1.3일 공포되어 시행중이고 제4조제5항은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에서 수정된 음주상태로 문구 수정 필요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12 ~ 2018.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보류

- 체험교육장 교육이수자는 법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나 배려대상이 아니며 또한 체험장이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대상, 횟수, 시간 등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고, 대부분 1~2시간 교육이수자로 이를 이수 했다고 하여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 안전교육 활성화차원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현행 조례에 의거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시적 검토방안 검토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12 ~ 2019. 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원안 수용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와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조례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레저문화의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인프라 증가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음¹⁾
- 안 제3조제3항은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조문 내용의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현행 조례에 신설²⁾되었음

■ 자전거 이용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 안 제4조제5항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³⁾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전거 이용시 음주운전을 금지토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일자 : '18. 9. 19 - 발의의원 : 정진철의원외 17명
- 상정일자 : '18. 12. 19 - 의결일자/결과 : '18. 12. 20 / 위원회에서 대안에 반영
- 개정내용: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한의학회지(2017.9),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2.1%	8.6%	8.0%	9.8%	16.1%	19.6%	18.2%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 한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에 따라 서울시내 15개소⁵⁾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67,25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음
-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로 인한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연간 30명에 달하고⁶⁾ 공공자전거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4)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서울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현황 (총 15개소)

연번	자치구	교육장명	교육인원('18)	연번	자치구	교육장명	교육인원('18)
1	성동구	자전거체험학습장	7,778	9	금천구	자전거안전교육장	302
2	동대문구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	516	10	영등포구	안양천 교통안전체험장	2,366
3	중랑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2,162	11	관악구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650
4	성북구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	127	12	서초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1,600
5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16,907	13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4,022
6	양천구	어린이교통공원	15,757	14	강동구	강동 바이크스쿨	4,735
7	구로구	새싹어린이교통공원	3,450	15	한강사업본부	광나루 교육장	1,877
8	강서구	새싹어린이교통공원	4,695	용산구 교육장, 18.12월 폐쇄 (교육인원 306명)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자전거 이용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 될 수 있음

- 다만, 교육이수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전거 체험교육장 이수자의 감면비율 검토와 공공자전거
이용시 감면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총면적’ 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그동안 관련법령 등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면적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대수를 정하
였으나, ‘총면적’을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왔음

6) 서울시 자전거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3,250	4,065	4,062	3,503	2,990
사망자수	26	37	27	24	30
부상자수	3,410	4,295	4,329	3,718	3,143

-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29일 자전거 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총면적’체서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주차대수의 40%’,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⁷⁾

※ 참고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노상주차장(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40%
노외주차장	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40%
	민간 설치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20%
부설주차장 (민간 설치)	주택, 문화, 집회시설 등	주차대수의 20%	
	공장, 발전시설 등	주차대수의 10%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7)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 다. (생략)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 마. (생략)

- 한편, 서울시는 변경된 설치기준이 향후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